

# 일본의 상속법 개정

김경석 | 법학박사, 중앙대학교 시간강사

## I 들어가며

일본 민법 제5편 상속은 메이지 31년(1898)에 제4편 친족과 함께 공포되고, 이미 공포되었던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과 함께 동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상속법은 1980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인상과 기여분 제도 신설 등의 규정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sup>1)</sup> 그런데 2018년 7월 6일 약 40여년 만에 「민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개정 상속법'이라고 한다)」과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언서보관법'이라고 한다)」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개정 상속법과 유언서보관법은 7월 13일 공포되었다.

2018년 이루어진 일본의 상속법 개정은 고령화의 지속적 진행과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특히 배우자)의 연령이 종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자녀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속과 개호에 관한 문제, 고령자의 재혼증가에 의한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른 유산의 배분으로는 실질적인 공평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 등도 상속법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sup>2)</sup>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동 개정이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980년 개정 이후에도 개정은 이루어졌으나 소폭의 개정만이 이루어졌다. 일본 상속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法制審議會民法(相続關係)部会 第1 회会(平成27年4月21日) 参考資料2(これまでの改正経緯)] 참조.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content/001143587.pdf>

2 鈴木 達也, 約40年ぶりの相続法の大改正, 立法と調査 No. 406,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 2018년 11월, 22면.

## II 개정 상속법의 성립경과

### 1. 개정의 계기

최근 40여 년간 일본은 국민 평균수명이 남성의 경우 7세, 여성의 경우 9세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상속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해결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이루어진 상속법의 개정도 그러한 논의 중에 포함된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속법 개정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구체적으로는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인, 그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개호문제, 고령자의 재혼증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해 기존 법률규정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공평한 상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변화 속에서 상속법 규정과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2013년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적출이 아닌 자(子)의 상속분은 적출인 자(子)의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 900조 제4호 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sup>3)</sup>

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제185회 국회에 적출자와 적출이 아닌 자의 상속분을 동등하게 규정한 민법개정안을 제출하고 2013년 12월 2일 동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위 개정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대두되었고 배우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속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성은 바람직한 상속법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민법 연구자와 일반 지식인 등의 협력을 얻어 2014년 1월부터 ‘상속법제 검토 작업팀(working team)’을 구성하였다. 해당 작업팀은 2015년 1월까지 11회에 걸쳐 논의를 거듭하여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거주권보호, ② 배우자의 공헌에 따른 유산분할의 실현, ③ 기여분제도의 개선, ④ 유류분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상속법제검토 작업팀 보고서<sup>4)</sup>’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2015년 4월 구성된 ‘법제심의회·민법(상속관계)부회(이하 ‘법제심의회’라고 한다)’에서의 논의에 참고자료가 된다.

### 2. 법제심의회에서의 논의와 법률안의 성립

법제심의회에서는 상속법제 검토 작업팀에서 논의된 4개의 주제에 ① 상속인 이외의 자의 공헌고려, ② 예·저저금 등 가분채권의 취급, ③ 유언 등의 3개 주제를 추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 6월 21일 ‘민법(상속관

3 最大決平成25年(2013년) 9월 4일 民集67권 6호 1320면.

4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content/001143586.pdf>

계)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이하 '중간시안'이라고 한다)<sup>5)</sup>을 통해 논의의 결과가 정리된다.

중간시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거쳐 2017년 7월 18일 유산분할 등에 관한 개선과 유류 분 제도에 관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시안 후에 추가된 민법(상속관계) 등의 개정에 관한 시안(이하 '추가시안'이라고 한다)<sup>6)</sup>이 발표된다.

추가시안도 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1월 16일 '민법(상속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sup>7)</sup>으로 전원 일치로 결정되었으며 동 요강안은 2월 16일 원안그대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2018년 3월 13일 위 요강안을 바탕으로 하는 상속법개정안과 유언서보관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7월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7월 13일 성립하기에 이른다.

### III 개정 상속법의 주요 내용

#### 1. 개정 상속법

개정 상속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거주권의 창설

배우자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했던 건물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배우자거주권)를 창설하였으며, 동 권리는 유산분할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동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며 유산이 주택 2000만원, 예금 3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예금은 500만원밖에 상속받지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거주권의 창설로 위의 경우 배우자는 주택에 대해 1000만원만 상속받고(배우자거주권), 주택의 나머지 부분은 자녀가 상속(부담부소유권)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금도 각각 1500만원씩 상속이 가능해져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비의 곤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우자거주권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에 한정되며 배우자거주권은登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거주건물이 멸실되면 배우자거주권은 소멸하고, 거주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5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content/001201997.pdf>

6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content/001231522.pdf>

7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content/001246034.pdf>

8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content/001263589.pdf>

배우자거주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거주건물의 소유자는 배우자거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 거주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서 거주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다.

배우자거주권은 배우자의 거주권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에 비해 단기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창설되었는데 바로 배우자단기거주권이다.

배우자단기거주권이란 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의 건물(거주건물)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① 배우자가 거주건물의 유산분할에 관여하는 때에는 거주건물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까지(최소 6개월 보장), ② 거주건물이 제3자에게 유증된 경우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거주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소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거주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2) 유산분할 전 예·저금 인출가능 규정의 마련

각 공동상속인은 유산에 속하는 예·저금채권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이나 상속인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등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유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예·저금의 인출이 불가능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sup>9)</sup>

구체적인 인출가능 금액은 [상속개시 시 예·저금 채권액 × 1/3 × 지불요구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으로 하고 있다.

## (3)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완화

자필증서유언<sup>10)</sup>의 요건을 완화해서 자필증서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은 자필일 것을 요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4) 유류분제도의 개정

유류분감쇄청구권(遺留分減殺請求權)의 행사에 의해 당연히 물권적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현 행법을 개정하여 유류분침해액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유류분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채권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유증 등의 목적재산이 사업용 재산이었던 경우에 원활한 사업승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공유관계의 해소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1)</sup>

9 第196回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會議録 第19号, 7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6/0003/19606280003019.pdf>

10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날짜, 성명을 자필로 하고 압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일본 민법 제968조).

11 第196回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會議録 第21号, 1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6/0003/19607050003021.pdf>

또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에 대해 법원이 일정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원이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후 있도록 한 것은 유류분권리자로부터 금전청구를 받은 수유자 등이 즉시 금전을 준비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sup>12)</sup>

### (5) 공동상속에서의 대항요건 개정

기존 규정은 유언 등에 의해 승계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의 대항요건이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권리의 승계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도록 했다.

### (6) 특별기여제도의 창설

상속인 이외 피상속인의 친족이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등을 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속인에 대해서 금전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동 규정에서 청구권자를 피상속인의 친족으로 한정된 것은 상속을 둘러싼 분쟁의 복잡화,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피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는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등을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보수의 약정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 것이다.<sup>13)</sup>

### (7) 시행기일

이러한 개정법률은 공포일(2018년 7월 13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필증서유언방식의 요건완화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 배우자거주권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언서보관법

일반적으로 유언서는 자택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유언서의 분실이나 상속인에 의한 폐기, 은닉, 수정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결국은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2 第196回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21号, 2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6/0003/19607050003021.pdf>

13 第196回国会参议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19号, 3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6/0003/19606280003019.pdf>

이에 공적기관에 유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하여 상속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자는 법무국(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법무국 혹은 지방법무국 혹은 이들의 지국 또는 이들의 출장소)에 민법 제968조에서 정하는 방식(자필증서유언)에 의한 유언서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무국에 유언서의 반환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 및 청구는 유언자가 스스로 법무국에 출두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관된 자필증서유언은 가정법원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기가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서나 자기를 수익자 또는 유언집행자로 한 유언서의 경우에는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무국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서와 관련한 영상정보 등을 증명한 서면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의 열람 혹은 서면교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무국이 상속인에 대해서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 IV 마치며

한국사회는 일본과 동일 내지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가 노년층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sup>14)</sup>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에도 못미쳐 역대 최저였으며,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4.8%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1년 만에 노인인구가 1%포인트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며 2050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38.1%까지 급증해 일본(37.7%)을 앞지르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sup>15)</sup>

따라서 우리에게 앞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상속법 개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존배우자의 고령화가 일반적인 추세인 사회적 상황 하에서 생존배우자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해 특별수익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할 수

14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2019년 1월 25일 기사.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953>

15 인터넷신문 서울경제, 2019년 1월 20일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40CVHXA>

있도록 한 것은 우리의 상속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기관에서 유언서를 보관하는 제도를 통해 유언서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감소시키고, 국민 모두가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속인이 아님에도 특별기여제도를 통해 선의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한 규정이나 예·저금채권의 가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생계비나 장례비용의 처리 등을 위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일정 범위의 예·저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과 같이 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개정사항들도 일본과 동일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논문]

浦野由紀子, 配偶者の居住権保護の相続分見直し, 論究ジュリスト20號, 有斐閣, 2017.

森田宏樹, 可分債権の遺産分割における取扱い, 論究ジュリスト20號, 有斐閣, 2017.

羽生香織, 遺言制度に関する見直し, 論究ジュリスト20號, 有斐閣, 2017.

小池 泰, 遺留分制度に関する見直しについて, 論究ジュリスト20號, 有斐閣, 2017.

鈴木 達也, 約 40年 ぶりの相続法の大改正, 立法と調査 No. 406, 参議院常任 委員会調査室, 2018년 11월

곽민희, “일본의 배우자 상속법제 개정작업 관견(管見)”,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박정기, “일본의 상속법 개정”,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 [인터넷 자료]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 第 1 回会(平成27 年 4 月21 日) 参考資料 2 (これまでの改正 経緯)

<http://www.moj.go.jp/content/001143587.pdf>

相続法制検討ワーキングチーム報告書

<http://www.moj.go.jp/content/001143586.pdf>

民法 (相続関係) 等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http://www.moj.go.jp/content/001201997.pdf>

中間試案後に追加された民法 (相続関係) 等の改正に関する試案 (追加試案)

<http://www.moj.go.jp/content/001231522.pdf>

### 일본 국회회의의사록 검색시스템

第196 回 国会参議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19号.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6/0003/19606280003019.pdf>

第196 回 国会参議院法務委員会会議録 第21号.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6/0003/19607050003021.pdf>

###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2019년 1월 25일 기사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953>

인터넷신문 서울경제, 2019년 1월 20일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40CVHXA>